



보도자료

근로기준국	근로기준팀
팀장	하미용
담당사무관	이재준

▶ 2007. 1. 29. 배포

▶ 총 11 쪽 (사진 없음)

TEL : 503-9742

E-MAIL : leeijn@hanmail.net

FAX : 503-9743

‘떡값은 못 줄 망정..’

노동부, 설 대비 『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』 실시

-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 지급, 생계비 대부 등 실시

광주직할시에서 계량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(주)G사의 대표 K 모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가족들의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가 도산, 1억 1천 6백여만원의 근로자 임금·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난달 24일 구속되었고,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다.

- 설을 맞아 임금·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.
- 노동부는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 까지 20일간을 『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』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 『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』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 하였다고 29일 밝혔다.
-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△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

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·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△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,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.

- 『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』 동안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,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.

○ 한편,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은 1조 297억원(27만 7천명)으로 이중 3,614억원(12만9천명)은 정부지도로 청산되었다.

- 미 청산된 6,159억원(13만6천명)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고, 나머지 524억원(1만2천명)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.

※ 미청산 임금 중 체당금으로 1,608억원 지급, 2,111억원은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시

○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“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.”며

- “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○ 임금·퇴직금 등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 상세한 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(☎1350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1

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

2007. 1.

노동부

- 목 차 -

1. 체불임금 신고처리 및 권리구제 현황	1
2.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	2
2-1. 임금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지도	2
2-2. 체당금 신속지급	2
2-3. 생계안정 지원	3
2-4. 권리구제 적극지원	3
3. 관계부처 협조사항	4

2.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

설 전 20일간('07. 1.29~2.17.)을 『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』으로 설정,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 집중

2-1.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지도

-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 구성 운영
 - ※ 집중지도기간 평일 22:00까지 비상근무 및 휴일 비상연락 유지
- 임금체불예방 활동
 -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공문발송, 현장지도 전개
 -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안내 리플릿 배부(지방노동관서) 등 홍보 활동
 - ※ 홍보리플릿, 「임금을 받지 못하십니까」 10만부 배부
- 체불상황 적극대처 및 집단체불 신속대응
 - 재산은익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(검찰과 협조)
 -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지원
 - ※ 체불사실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무료법률구조지원
 - 체불임금 규모별 전담·보고체계 유지로 집단체불 신속대응
 - ※ 신규 체불 10억원 이상 지방노동관서장, 1억원 이상 근로감독과장
- 체불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상담 강화
 - 노동부종합상담센터(☎1350),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합동민원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상담 및 지원
 - ※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수창구 운영, 팩스접수

- 체불신고가 많은 지방노동관서 15개소의 『체불청산지원팀』 활동 강화

2-2. 체당금 신속지급

-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,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통보

-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임금·휴업수당·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대위지급

※ 지급한도 : 최종 3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, 최종 3년간의 퇴직금

▶ 예산 '06년 1,652 억원 → '07년 1,815억원

2-3. 생계안정 지원

-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

-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범위내 1인당 500만원 한도

※ 1년 거처 3년 분할상환, 이율 3.4%, ▶ 07년 예산: 240억원

- 국세환급금 양도제도 안내

-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권리를 양도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령

※ 사업주가 국세환급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

2-4 권리구제 적극지원

- 사업주의 재산도파·청산의지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무료법률구조지원

※ 지원실적 : '05.7.1~'06.12. 31 현재 본안소송기준 54,306명 2,557억원(소송가

액)

3. 협조체제 운영

- 본부 :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협조요청
- 지방노동관서 :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

관 련 부 처	협 조 사 항
법 무 부 대 검 찰 청	○ 도주,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 엄정조치 ○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구조 적극 지도
행정자치부	○ 지자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이나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토록 하는 등 체불청산 지도
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	○ 주요공단,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지도
건설교통부	○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을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
공정 거래 위 원 회	○ 발주자 또는 원수급업자의 (하)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
조 달 청	○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을 지급하는 등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
경 찰 청	○ 체불관련 지명 수배·통보 피의자 신속검거
국 세 청	○ 임금체불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 양도를 통한 지급 협조

<참고1>

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

□ 제도 개요(채당금 : 替當金)

-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·휴업수당,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**채불임금을 대위 지급하는 제도**

□ 사업내용

- 지급요건 : 기업의 도산(재판상 도산, 사실상 도산)
 - ※ 재판상도산 : 파산선고·회생절차개시결정(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)
 - ※ 사실상 도산 :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
- 사업주 요건 :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
- 근로자 요건 : 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
- 지급 대상 근로자 : 재판상 도산은 모든 사업장, 사실상 도산은 300인 이하 사업장 소속근로자 ※ 1인 이상 확대 : 2000. 7. 1.
- 채당금 지급보장 범위 : 최고 1,020만원까지 지급
 - 최종 3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
- 절차 : 지방노동관서에 청구(도산일 2년 이내) → 지방노동관서 사실 확인 →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

□ '07년 사업예산 : 1,815억원

- 161억원('98.7)→704('01)→1,220('03)→1,591('04)→1,602('05)→1,608('06년)
 - ※ 지급누계 8,362억원('98~'06년), 회수 3,760억원, 회수율 45.0%

□ 재원 등

- 관리주관 : 노동부(퇴직급여보장팀)
 - 임금채권보장기금 : 근거법령 → 임금채권보장법
- 주요재원 :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.4/1,000 의 부담금 징수
 - ※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(산재보험적용대상과 동일)
- 주요사업 : 채당금 지급,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등

【 참고 2 】

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'07년 사업규모 : 240억원

○ 대부대상 및 조건

-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소속 근로자
-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
 - ※ 연리 3.4%,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
 - ※ 생계비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, 체불기간이 긴 자, 체불총액이 많은 자, 중소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용자

○ 보증요건

- 보증·담보없이 대부가능(신용보증지원, 보증료는 연 1.0%)
 - ※ 제외대상 :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거래자, 만 60세 이상인 자, 사업주

○ 대부절차

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또는 지사)에 신청 →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→ 우리은행에서 대부

□ 재원 등

- 관리주관 : 노동부(노사협력복지팀), 운용 : 근로복지공단
 - 근로복지진흥기금
 - 주요재원 : 용자원금회수, 이자수입, 이월금, 복권기금전입금

【 참고 3 】

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

□ 사업 개요

- 임금채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※ 국세기본법 제53조 참고

○ 제도 운영의 필요성

-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

○ 이용효과

-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여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애로기업의 사정(압류 등)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

○ 이용절차

-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(사업주)는 세무서장이 '국세환급금 통지서'를 발급하기 전에 「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」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

※ 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

- 사업주 → 소관세무서 → 세무서 확인 → 근로자에게 지급

【 참고 4 】

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

□ 미청산(청산지도중) 체불임금

○ '06.12.31. 현재 12천명 524억원 ('07년 1월중 발생액 미포함)

※ '06년 설전('06. 1.26) 미청산 체불임금 27천명 957억원

▶ 발생 1,366억원(이월664억원, 1월중 702억원), 청산 12천명 409억원

□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

(단위 : 천명, 억원)

구 분	'98	'00	'02	'03	'04	'05	'06
근로자 수	312	161	109	155	301	292	277
금 액	12,185	6,118	3,461	5,211	10,426	10,291	10,297

주) '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 ('03년까지는 5인 이상)

□ 체당금 지급 현황

(단위 : 천명, 억원)

구 분	'98	'00	'02	'03	'04	'05	'06
근로자 수	5	14	18	35	43	43	45
금 액	161	458	629	1,220	1,591	1,602	1,608

주) 체당금 지급대상 : 1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(사실상 도산은 300인 이하)

□ 무료법률구조 지원 실적('05. 7. 1. 시행)

▶ '06년 : 44,534명 2,110억원(소송가액), 05년 : 9,772명 447억원

※ 본안소송의 소송가액 기준 :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

□ 참고통계 : 임금인상률(명목) '06년(10월말) 5.8 % ('05년 6.6%)

임금체불사건 처벌(구속)사례

- 피의자는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소재 (주)○○○○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계량기제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여 온 자임
-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○○○의 퇴직금 3,700,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5명에게 임금 47,404,397원, 상여금 5,605,268원, 퇴직금 62,964,030원 도합 115,973,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
- 피의자는 회사의 가공채무를 만들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로 피의자 가족들의 경비를 지출하는 등 경영부실을 초래하여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게 하고 배우자와의 위장이혼 등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음
- 이에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하여 검찰에 구속지휘요청 후 '07. 1. 24.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퇴직근로자 32명에게는 체당금88,785,150원을 지급하여 권리구제를 하였다.